

EU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장명화 선임연구원(clarajang@kdb.co.kr)

- I. EU의 기후행동과 지속가능금융
- II. EU의 지속가능금융 주요 정책 동향
- I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파리협정 이행 시기 도래로 글로벌 新기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U, 미국 등 주요국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전략이자 발전기회로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을 지향하는 목표를 발표하고 선도적으로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1조유로 규모의 그린딜 투자계획, 유럽기후법 제정 및 관련 법안패키지 발표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와 ESG 금융상품으로 유입되면서 그린워싱(위장친환경행위) 리스크도 동반 증가함에 따라, EU를 필두로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및 관련 제도 수립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다.

EU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자 녹색경제 활동으로 흐름을 유도할 주요한 수단으로서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녹색경제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녹색경제 전환을 독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EU의 녹색분류체계의 구체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규정 개선 등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규제 정비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금융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주시하고 신속히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EU의 기후행동과 지속가능금융

1. 배경

□ 2015년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파리협정 채택 이후 지속가능발전과 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산

○ UN은 2015.9월 제70차 UN총회에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고 SDGs17(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7)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구체화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및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를 통해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념¹⁾
- UN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 수립에 합의하고 이행 주체를 모든 회원국 및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로 설정

<그림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목표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사회 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정의·평화·포용적인 제도	지구촌협력	SDGs17

자료 : KoFID-KOICA(2016.2),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2015.12월 파리협정을 거치며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글로벌 공조가 확대

- 파리협정에서 모든 당사국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로 노력’하는 목표 설정에 합의
-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²⁾를 넘어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新기후 체제를 수립하며 전 세계적으로 협정 이행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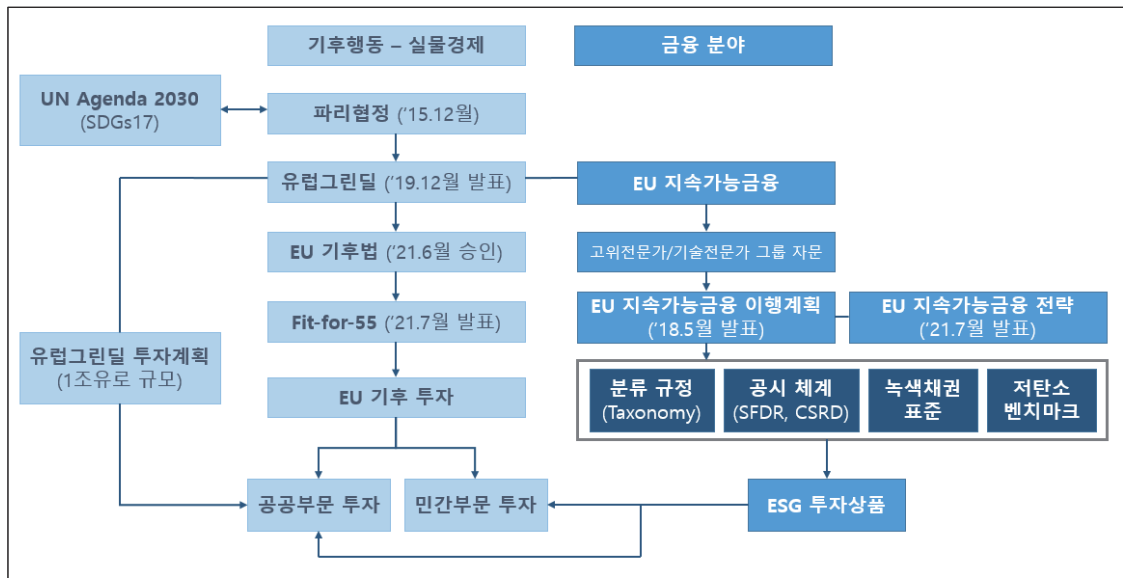
1)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Our Common Future”(1987)

2) 1997년, 기후변화에 대한 제3차 총회(일본 교토)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감축 계획 (2008~2012년: 평균 5.2%, 2013~2020년: 평균 18% 감축(1990년 대비))을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합의

2. EU의 기후행동

- EU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을 통해 유럽을 최초의 기후중립(climate-neutral)³⁾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EU회원국들의 기후행동을 촉구
- EU는 EU조약⁴⁾에 의해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EU의 중요가치로 설정
- 2019.12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2020.3월 유럽기후법을 제안하는 등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추진

〈그림 2〉 EU의 기후행동과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자료 : Intereconomics(2021.11), "Green Finance in Europe – Strategy, Regulation and Instruments" 재구성

- 3) 온실가스 순배출이 0이 되는 상태로, 이산화탄소 순배출이 0인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과 유사한 개념. '유럽 기후법'의 설명문(explanatory memorandum)에서는 이산화탄소 외에 다른 모든 온실가스에서도 순배출이 0이 되어 함을 강조
- 4) EU조약(2008년)은 '역내시장을 설립하며, 이를 통해 유럽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제1장 공통규정 3조 3항)', '빈곤 근절을 목표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촉진(제5장 EU의 외교적 작용 및 공동 대외·안보정책에 대한 특별규정 21조 2(d)항)' 한다는 내용을 포함

-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
 - 유럽 그린딜은 산업과 교통,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경제 영역을 포괄하며, 현재의 경제활동들을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모든 지역이 예외없이 공정하게 전환하는 것이 핵심
 - EU는 유럽 그린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년간 최소 1조유로를 투자하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The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수립(2020.1월)하고 공공·민간 금융의 유입을 촉진

-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해 유럽 기후법을 제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
 - (유럽기후법) 2021.6월 승인된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
 - (Fit-for-55) EU는 후속으로 Fit-for-55 법안패키지를 발표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
 - Fit-for-55 법안패키지는 탈탄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 수단의 조건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관련 산업 및 회원국의 경쟁력 확보를 제시
 -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인위적인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그림3> 'Fit for 55' 법안 패키지 주요 내용

가격 결정	목표 설정	규정 강화
1. 항공 분야 배출권거래제 강화 2.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 배출권거래제 신설 3. 에너지조세지침 개정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5. 노력분담규정 개정 6.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삼림 규정 개정 7. 재생에너지지침 개정 8. 에너지효율지침 개정	9. 승용차 및 승합차 탄소배출 규제 기준 강화 10. 대체연료 인프라규정 개정 11. 항공운송 연료 기준 마련 12. 해상운송 연료 기준 마련
지원 대책		
13.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신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The Fit for 55 Package : At a glance" 정리

3. EU의 지속가능금융

□ EU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이행을 촉진하고 그린워싱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프레임을 조성하고 법적·제도적 기반환경을 구축 중

- EU는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17)로 대표되는 국제사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 추진을 결정
 - EU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을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ESG))를 고려하는 금융·투자 활동으로 정의⁶⁾
 - ESG 관련 투자 증가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그린워싱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녹색 여부를 판단·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분류체계와 관련 정보에 대한 통일되고 투명한 공시제도의 필요성이 증대
 - EU는 ‘Next steps for a sustainable European future: European action for sustainability(2016)’이라는 정책문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을 추진하여 SDGs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개하고 이행방안을 마련
- 2018.3월,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3대 목표 및 10대 실행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이 발표되었으며, EU는 이를 토대로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지속가능성 공시규정 강화, 녹색채권 표준 도입 등을 추진

〈표 1〉 EU 지속가능금융 10대 실행계획

목표	실행계획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자본흐름 전환	① EU 녹색분류체계 수립
	② 녹색금융 표준 및 라벨 도입
	③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촉진
	④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금융자문 제공
	⑤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⑥ 신용평가 및 시장조사 시 지속가능성 고려
	⑦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의 의무에 지속가능성 포함
	⑧ 은행 및 보험사 대상 건전성 규정에 지속가능성 고려
투명성과 장기적 관점 육성	⑨ 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 규정 강화
	⑩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촉진 및 자본시장의 단기 성과주의 지양

자료 : European Commission, “Action Plan : Financing Sustainable Growth(2018)”

5) Green washing: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해 소비자·투자자의 결정에 혼란을 주는 행위

6)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_en

- EU는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수립(2018년) 이후 유럽 그린딜의 실천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 증가 등 국제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2021.7월 지속가능금융 전략(Sustainable Finance Strategy)을 발표
 -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자,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2018년)과 TEG(Technical Expert Group) 자문 등을 기반으로 전환금융, 포용력, 복원력 및 금융시스템 기여, 분류체계의 국제화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전략을 도출

<표 2> EU 지속가능금융 전략

목표	주요 활동
① 실물 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전환금융	-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에 자금 지원 - 전환노력 인정을 위한 EU 분류체계 프레임워크의 확장 - EU 분류체계에 지속가능한 활동영역 추가 - 지속가능한 재정 표준 및 레이블을 확장하여 전환 노력에 자금을 지원
② 보다 포용적인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조성	- 소매 투자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가능금융에 접근 기회 지원 - 지속가능금융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후 및 환경 위험으로부터 보호 - 사회적 분류에 대한 보고서 게시 - 녹색 예산 책정 및 위험 공유 메커니즘 조성
③ 금융시스템의 탄력성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 : 이중중요성 ⁷⁾	- 지속가능성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고 자연자본(Natural Capital) ⁸⁾ 계정을 장려하는 재무보고기준 도입 -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에 ESG 위험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표현 - 은행의 위험관리 시스템과 보험사의 건전성 프레임워크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고려 - 지속가능성 문제에서 비롯되는 잠재적인 시스템 위험을 모니터링 및 해결 - 금융부문 규정에 대한 과학 기반 목표 설정, 공시 및 모니터링 강화 - 투자자의 수탁자 의무 및 관리 규칙 명확화 - ESG 시장 조사 및 평가의 가용성, 무결성 및 투명성을 개선 - 그린워싱 해결을 위한 감독 권한 평가 - EU금융시스템의 진척 측정을 위한 강력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발 - EU금융시스템의 그린딜 목표 부합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당국 간 협력 개선
④ 글로벌 협력 촉진	- 국제 포럼내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및 표준을 개발 - 지속가능금융 국제 플랫폼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지배구조를 강화 -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전환 노력 지원

자료 :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Finance Strategy(2021.7)"

- 7)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impact)과 그 결과로서 기업이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 ※이중 중요성 관점에서 정보제공의 예: 기업은 연간 탄소 배출량과 함께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동시 공개 가능
- 8) EU는 생태계 안에서의 순환작용을 통해 기업과 사회에 다양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을 자본이며,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식 (글로벌 생물다양성 관련 움직임 동향 및 국내 시사점 연구, 2019)

II. EU의 지속가능금융 주요 정책 동향

1.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 EU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친환경 경제로 금융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분류규정(Taxonomy Regulation)을 제정하고 녹색분류체계를 수립
 - 녹색분류체계(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별하는 수단으로, 기업과 투자자가 명확한 분류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이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유도
 - 기업들은 Taxonomy를 근거로 경제활동의 친환경 여부를 결정하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관련 금융상품을 설계 하는데 공통 기준을 준수
 - EU집행위원회는 2019.5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 제정을 제안 하고, TEG(Technical Expert Group) 등의 자문을 거쳐 2020.6월 유럽의회 승인
 - EU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활동에 관한 6대 환경목표와 4가지 판단기준을 발표

〈표 3〉 EU 녹색분류체계의 환경목표 및 판단조건

환경목표	판단조건
①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Substantial Contribution)
②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②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DNSH: Do No Significant Harm)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Minimum Social Safeguards) ^{주)}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④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부합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주 : UN기업 및 인권 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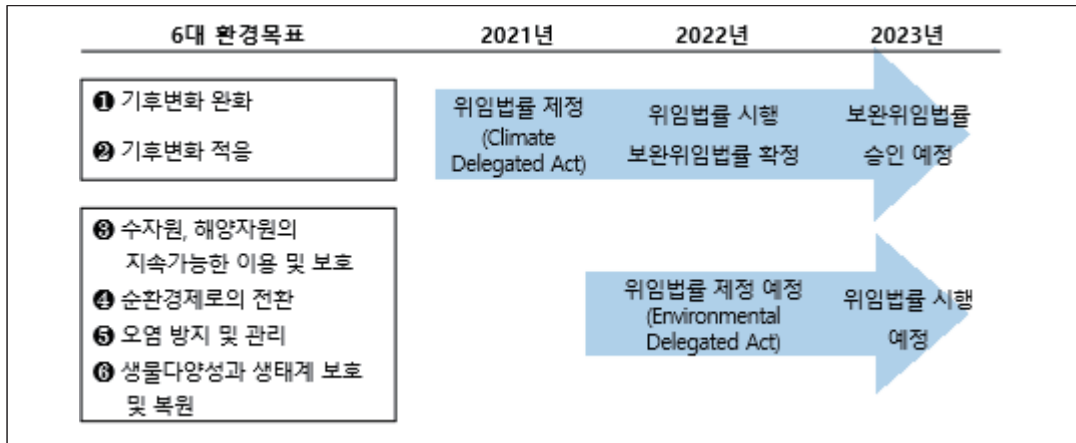
자료 : EU, Taxonomy Regulation Delegated Act(2021.6)

□ EU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에 따른 상세한 선별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위임법률(Delegated Act)을 제정

- EU의회는 환경목표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기술선별 기준(TSC: Technical Screening Criteria)⁹⁾ 등 상세기준을 위임법률(Delegated Act)¹⁰⁾로 제정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EU 공통기준을 수립
 - 6대 환경목표 중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목적에 맞는 구체적 기준 (TSC)은 Climate Delegated Act로 2021.6월 제정, 2022.1월부터 시행
 -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9개 분야¹¹⁾, 88개 경제 활동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13개 분야¹²⁾, 95개 경제활동으로 구분하여 지속가능금융의 투자기준으로 활용
 - 나머지 4가지 환경목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Environmental Delegated Act로 2022년 제정되어 2023년 이후 시행될 예정

<그림4>

기후 위임법률 제정 추진 동향



9) 각 환경목표에 상당히 기여하는 경제활동들을 유럽표준산업분류(NACE) 기준으로 나열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검토 (TEG, "Taxonomy: Final report"(2020.3) Summary tables)

10) EU집행위원회가 EU 법률의 상세 집행기준 등 보조적 요소들을 추가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

11) △임업, △환경 보호 및 복원, △제조업, △에너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관리 및 개선, △운송, △ 건설 및 부동산, △정보통신, △전문, 과학 및 기술

12) △임업, △환경 보호 및 복원, △제조업, △에너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관리 및 개선, △운송, △ 건설 및 부동산, △정보통신, △전문, 과학 및 기술, △금융 및 보험, △교육, △건강 및 사회사업 활동,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레이션

- EU집행위원회는 2022.2월, Climate Delegated Act에서 배제되었던 원자력·천연 가스 발전 등을 분류에 포함하는 보완위임법률(Complementary Delegated Act)을 발표했으며, 해당 규정안은 EU 의회·이사회 검토를 거쳐 승인 예정

2.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 EU는 기업 및 투자자에게 지속가능한 기업활동과 지속가능성 투자를 촉구 하고자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제화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공시를 제도화하는 정책을 마련
- EU는 NFRD(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CSRD(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및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등을 통해 공시의무를 입법화

〈표 4〉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대표 지침/규정

구분	NFRD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CSRD ^{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SFDR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채택	2014년	2021.4월	2019년
시행	2018년	2024년 예상	2021.3월
적용대상	직원 500명 초과 대기업	모든 EU 대기업 및 상장기업(상장 소기업 제외)	금융기관

주 : NFRD를 보완개정

자료 : European Commission; UNGC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

- EU는 2014년 역내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업공시 의무를 위해 NFRD(Non 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를 법제화 하였으며, 이후 2021.4월 NFRD 개정안으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제안을 채택
- CSRD는 NFRD 제정 이후 진전된 EU의 ESG 정책과의 연계성을 보완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의 신뢰성, 일관성, 접근성, 비교가능성을 강화하는데 중점
- EU집행위원회는 NFRD 대비 적용대상을 확대한 CSRD 적용으로 약 49,000개 사가 지속가능성 정보 의무공시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

- 2022.4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¹³⁾은 CSRD를 구체화한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초안을 발표하였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안을 11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동 기준 확정시 CSRD 적용대상기업은 2024년부터 ESG 정보를 공시할 전망

〈표 5〉 NFRD와 CSRD 주요 내용 비교

분류	NFRD	CSRD
근거규정	EU Directive 2014/95	집행위 채택(의회 의결, 회원국 입법 등 요)
시행	2018년	2023년 재무년도에 대해 2024.1월부터 적용
공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가지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 인권존중 - 반부패 - 경영진 다양성 (성, 교육, 전문성 등) ○ 주제별 공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 정책이행 결과 - 리스크 - KP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추가 공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 리스크의 회사 영향과 회사의 사회 및 환경에의 영향 (이중중요성) - 이해관계자 영향 - 목표와 진행정도의 예측정보 - 사회, 인적자본 등 무형 자산 관련
외부감사	자발적	의무적
공시수단	연차보고서	경영보고서
대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rge public companies 中 종업원수 500명 초과 ※ large public companies : 상장사, 은행, 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rge public companies 中 아래 2가지 이상 충족 - 아 래 - 1) 종업원수 250명 2) Turnover 4천만유로 3) Total Assets 2천만유로 ※ 다만, 소규모 상장사는 종업원수 1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천만유로 미만시 적용 제외
회사수(추정)	11,600社	49,000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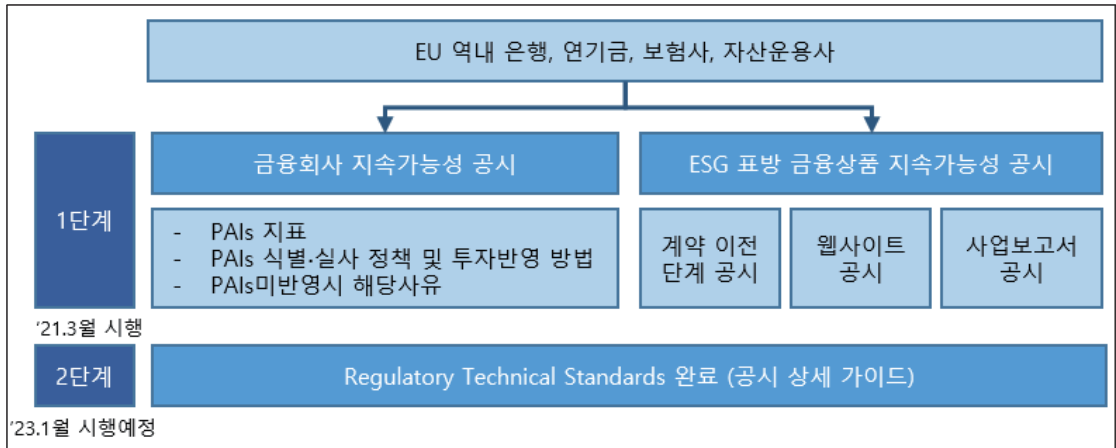
자료 : 금감원(2022.3), "EU의 기후환경변화 대응 위한 Taxonomy 관련 규정 제정 및 주요 내용"

13)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 2001.6월 설립된 유럽위원회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자문기관으로, EU집행위원회는 2021.4월 동 기관을 ESRS 제정기관으로 지정

-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은 EU 역내 금융기관의 투자 및 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21.3월 발효
 - 동 규정은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2018년)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그린워싱을 예방하면서 민간자본의 지속가능투자를 촉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 SFDR 체계상 금융회사 단위와 금융상품 단위로 구성
 - 금융기관은 금융자산 운용이 자사의 지속가능성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PAIs)을 18개의 지표¹⁴⁾로 분류하고 의무적으로 공시
 - 금융상품은 ESG투자와 무관한 상품, 환경적·사회적 특성을 홍보하는 상품,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상품으로 구분하고, 해당 상품의 지속가능 특성 및 목표 정보 등을 공시

<그림 5>

SFDR 체계



자료 : 광장(2021.6), "EU의 ESG 규제 주요 내용과 시사점-Taxonomy, SFDR, CSRD를 중심으로" 재구성

- EU집행위원회는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는 SFDR의 세부규칙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이던 2022.1월에서 2023.1월로 연기
- SFDR의 세부 이행사항인 규제기술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의 적용 및 지속가능펀드 공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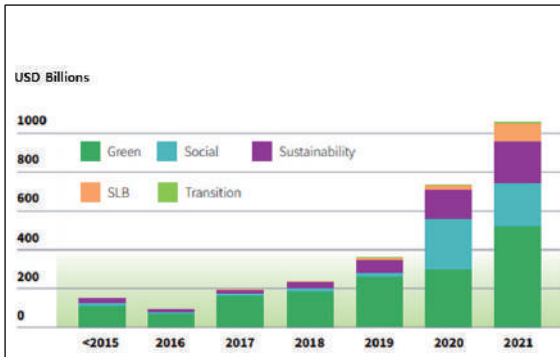
14) 기후·환경(온실가스배출량, 탄소발자국,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 등) 및 사회·노동자(인권보호, 성차별, 부패방지, 대량살상무기 제조여부 등), 국가, 부동산자산 등

3. 녹색채권 표준(EU GBS)

□ EU는 유럽에서 녹색채권¹⁵⁾ 발행 시 필요한 조건과 감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유럽 녹색채권 표준(European Green Bond Standard, EU GBS)' 제정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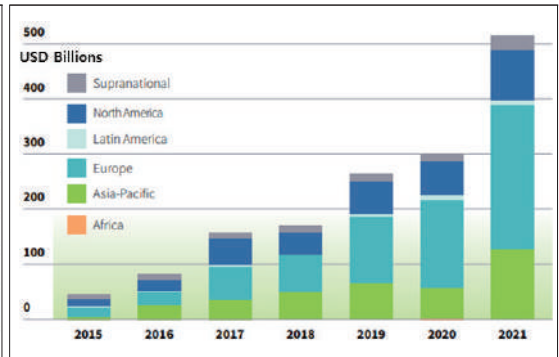
- 환경 관련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ESG 채권시장이 급성장하고,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채권의 적격성과 ESG 기준 및 등급평가, 사후적인 평가와 공시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확산
- 국제 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 CBI)는 ESG 채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녹색채권의 연간 발행액이 2023년에 1조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녹색채권의 연간 발행액은 2021년 기준 5,227억달러를 기록하며 2020년 2,981억달러 대비 75% 증가
 - 전 세계 녹색채권 발행의 50%¹⁶⁾를 차지하는 유럽은 관련 규제 및 재정계획에 따른 지원에 힘입어 현재의 주도권을 유지할 전망

<그림 6> 글로벌 ESG채권 발행 규모



자료 : Climate Bonds Initiative(2022.2)

<그림 7> 지역별 녹색채권 발행 비중



자료 : Climate Bonds Initiative(2022.2)

- EU의 녹색채권 표준(EU GBS)은 저탄소 전환에 금융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녹색채권에 대해 EU를 비롯하여 국제적 통일성을 도모
 - 동 표준은 EU권 녹색채권 발행자 뿐 아니라, 비 EU권역 발행자에게도 공개될 예정으로, 범국가적으로 녹색채권 발행 주체가 자발적으로 적용 가능

15)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16) 2021년 기준 2,650억달러

- EU 집행위는 EU GBS가 녹색채권 시장에서 세계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규정안에는 EU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전액을 EU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칙과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한 보고 및 외부감독기관의 감독 이행 의무 등이 포함
 -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상품 및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부합을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그린워싱을 방지
- EU 이사회는 2022.4월, '유럽 녹색채권표준(EU GBS)' 제정을 승인하였으며, 향후 유럽의회와 함께 동 표준의 상세조항 관련 협상을 거친 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4. 저탄소 벤치마크¹⁷⁾

- EU는 기후관련 투자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벤치마크의 개발과 벤치마크 운영자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
 -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2018년)에 따라, EU는 기존 벤치마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저탄소와 탄소 영향에 관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기준을 개발하는 활동을 추진
 - EU집행위는 2018.5월 두 가지 유형의 저탄소 벤치마크를 개발하고 벤치마크에 대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
 - ① EU 기후 전환 벤치마크(EU CTB): 탄소배출 수준을 측정하고 과학적으로 감소시키는 기업들을 선택하기 위한 지표
 - ② EU 파리협정-연계 벤치마크(EU PAB): 지구의 평균 온도를 2°C 낮추기 위한 파리협정 목표에 기여한 기업들을 선택하기 위한 지표

17) 투자의 운용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의 의향과 내부구조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뜻함

- 2019년 EU 벤치마크 규정(EU Benchmark Regulation, 2106) 개정을 통해 지표 관리기관에 탄소배출 감소 및 환경에 대한 기여도, 파리협정 준수에 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2020.4.30일부터 적용

Ⅲ.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EU의 지속가능금융 실행을 위한 규제 재정비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금융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

- EU의 ESG 관련 규제 입법화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국내 기업이라도 일정한 경우 준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EU 기업의 가치사슬에 포함될 경우에도 지속가능성 실사¹⁸⁾ 등 관련 영향을 받을 전망
 - 더불어, EU 시장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으려는 국내 기업 역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EU가 ESG 투자와 ESG 규제·기준 정립을 통해 국제사회 주도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EU의 ESG 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음
 -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ESG공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서 중장기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연적인 만큼 각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서의 중요성도 점증

- 한국정부도 다각화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ESG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이 국내 기업에게도 장기적인 수익 향상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EU 등 선진국의 지속가능성 및 ESG 정책 동향과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글로벌 표준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주시하고 신속히 반영해 나갈 필요

18) EU집행위는 2022.2월 CSRD와 관련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초안 발표

<표 6> ESG 관련 주요 글로벌 공시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발표시점	발표기구	특징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GRI Standards)	2016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ESG 분야의 지표 구체화 및 보고 요구사항의 명확화
SASB Standards	2018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별 중요성 지도 (Materiality Map)를 통해 산업별 공시 중요지표 제공 산업 내 다른 기업과 비교 가능성 제고
TCFD Recommendations	2017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지표 중점 4개 핵심영역(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치) 별 공시내용 권고안

자료 : UNEP-FI;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등 정리

<표 7> 지속가능금융 및 ESG 투자 관련 UN의 주요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발표시점)	주요 원칙	특징
책임투자원칙 (PRI) (2006)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과정 내 ESG 반영 투자철학과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로 역할 투자 대상기업에 ESG 이슈 정보 공개 요구 금융산업의 PRI준수와 이행을 위한 노력 PRI 이행 효과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PRI 이행 관련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외부에 보고 	전 세계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자산 소유주 투자이사 결정에 ESG 요소 고려
지속가능 보험 원칙 (PSI) (20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사 사업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ESG 요소 고려 사업파트너, 거래처 등과 ESG 리스크 관리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ESG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PSI 이행 과정을 투명하고 정기적으로 공시 	보험산업의 밸류체인 (상품 개발, 리스크관리 및 인수, 클레임, 판매와 마케팅, 자산운용 등) 전반에 ESG 요소 접목
책임은행원칙 (PRB) (2019)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전략을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파리 기후협정 등과 연계 금융상품·서비스의 부정적 영향 축소 및 긍정적 영향 확대 클라이언트 및 고객의 지속가능한 관행 장려 사회목표 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효과적 지배구조 체계와 책임은행 문화 원칙이행 정기 평가 및 투명성 확보 	은행권 대출 및 인수 활동에서 ESG요소를 포함하는 프레임워크 개발 시도

자료 : UNEP-FI;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등 정리

참고문헌

[국문자료]

임형성(2022),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향후 과제”, KIF 정책분석보고서
금융감독원(2022), “EU의 기후환경변화 대응 위한 Taxonomy 관련 규정 제정 및
주요 내용”

한상범·권세훈·임상균(202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KIEP 정책연구
오태현(2021),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전망”, KIEP세계경제포커스
김수연(2021), “ESG Focus, EU의 ESG 규제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광장
김한조(2020), “유럽의 그린 딜과 지속가능금융 관련 규제 발전 현황”, 금융투자협회
송지혜(2019), “지속가능금융 정책 현황과 시사점: EU 사례를 중심으로”, KIEP
기초자료

양춘승 외(2017),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 ESG 정보공개 제도의 국내외
현황 주요사례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연구 용역 보고서

이재훈(2017), “EU의 입법절차와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Issue Paper

KoFID·KOICA(2016),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영문자료]

Climate Bonds Initiative(2022), “Sustainable Debt, Global State of the Market 2021”

Volker Brühl(2021), “Green Finance in Europe - Strategy, Regulation and Instruments,
Intereconomics”

UN Environment Programme(2022), “Practical Approaches to Applying the EU
Taxonomy to Bank Lending”

European Commission, ec.europa.eu (Business, Economy, Euro > Banking and
finance > Sustainable finance)

European Commission(2021), “Sustainable Finance Strategy”

_____ (2021), “FAQ: What is the EU Taxonomy and how will it work
in practice?”

_____ (2021), “The Fit for 55”

_____ (2018), “Action Plan :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참고>

EU의 입법체계

(법률안제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유럽연합의 입법적 행위는 오직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만 채택

(심의 및 의결) 유럽연합의 입법절차는 일반입법절차와 특별입법절차로 구분

○ **일반입법절차:** 일반입법절차의 기본적 틀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입법적 행위(안)에 대해서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구조

① 입법적 행위(안) 제출: 유럽집행위원회는 입법적 행위 발안과 관련된 발안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입법적 행위(안)을 제출함으로써 일반입법절차가 개시

② 1독회

- 제출된 입법적 행위(안)에 대해서 유럽의회가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가 동의를 하면 당해 입법적 행위는 채택
-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 측의 의견을 채택한 후 그 이유와 함께 이를 유럽의회에 통지하여 2독회 진입

③ 2독회

- 이사회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유럽의회는 다수결에 의해 이사회 의견에 동의하면 입법적 행위 채택 또는 의원의 다수결을 통한 이사회 의견 거부 및 입법적 행위(안) 폐기 또는 의원의 다수결을 통한 개정(안) 제시
- 개정(안) 제시의 경우 이사회는 3개월 내로 가중다수결에 의한 개정(안) 채택이 가능한 반면, 개정(안) 거부 또는 3개월 도과를 통해 조정 단계 진입 시도 가능

④ 조정

-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파견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장 6주간 공동(안) 도출 시도, 이때 유럽집행위원회도 참여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견합의를 위해 협업
- 공동(안) 도출 실패 시 최종 폐기
-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유럽의회 측 구성원의 다수결 및 이사회 측 구성원의 가중다수결을 통해 공동(안) 성립 시 3독회 돌입

⑤ 3독회

- 6주내에 유럽의회의 다수결 및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을 통해 공동(안)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입법적 행위 채택
- 6주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종 폐기

○ **특별입법절차:**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상정하는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특별 입법절차가 운용 가능

(공포) 관보에 출판하는 방식으로 공포

- 법률에 효력발생일이 지정된 경우 그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
- 법률에 효력발생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관보 공간 후 20일 후 효력이 발생
-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채택된 법률은 유럽의회 의장 및 이사회 의장이 서명
- 특별입법절차의 경우 규정에 따라 유럽의회의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이 서명

EU의 법적행위 분류

구분	대상	효과
규정(Regulation)	모든 회원국 및 유럽연합에 소속된 자	구속력 발생
지침(Directive)	모든 회원국 또는 특정 회원국	구속력 발생 (회원국 법제로 전환 필요)
결정(Decision)	특정 회원국 또는 특정인	구속력 발생
권고 (Recommendation)	모든 회원국 또는 특정 회원국 예외적으로 기타 유럽연합 내 기관 또는 특정인	구속력 없음
의견(Opinion)	기타 유럽연합 내 기관, 특정 회원국 또는 불특정 수범 대상자	구속력 없음

자료 : 이재훈(2017), "EU의 입법절차와 현황"